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7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8.

발 의 자 : 구자근 · 인요한 · 이만희
김선교 · 유상범 · 나경원
김도읍 · 이종배 · 최은석
최보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세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차등이 없어 지방대학과의 협력 유인이 부족한 실정으로, 지방대학과 협력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연구·인력개발비 중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“연구·인력개발비”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(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)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,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.	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
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연구·인력개발비 중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</u>

② ~ ⑥ (생략)	<u>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</u> <u>른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</u> <u>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</u> <u>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</u> <u>비용에 100분의 10을 곱하여</u> <u>계산한 금액</u>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